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8.

발 의 자 : 박정현 · 박균택 · 문진석
모경중 · 서미화 · 이주희
박민규 · 박홍배 · 이광희
이연희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,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수 많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, 예산과 부채 등을 고려하고, 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 현행 인수위원회의 규정은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의 장직 준비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,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105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5항제1호 중 “20명”을 “50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5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시·도: <u>20명</u> 이내</p> <p>2. 시·군 및 자치구: <u>15명</u> 이내</p> <p>⑥ ~ ⑩ (생략)</p>	<p>제105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 <u>50명</u> ----</p> <p>2. ----- <u>30명</u> ----</p> <p>⑥ ~ ⑩ (현행과 같음)</p>